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내 개인정보는 잘 보호되고 있을까? 이 콘텐츠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위치정보, 금융 · 신용거래 분야, 교육분야 및 보건 · 의료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1
1.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4
1.1.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4
1.1.1. 개인정보 수집, 사용 시 제한 4
1.1.2. 이용자의 동의 획득 5
1.1.3. 피해구제조치, 파기 등 의무 8
1.2. 개인정보 보호하기 10
1.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10
1.2.2.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11
1.2.3.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13
1.2.4.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15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18
2.1.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18
2.1.1.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18
2.1.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20
2.1.3. 기록·보존, 누설금지, 파기의무 등 22
2.2. 위치정보 보호하기 24
2.2.1.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24
2.2.2. 개인위치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25
2.3.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27
2.3.1.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27
3.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31
3.1.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31
3.1.1.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의 원칙 31
3.1.2.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32
3.1.3. 파기, 누설금지, 고지 및 통지의무 등 35
3.2. 신용정보 보호하기 38
3.2.1.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38
3.2.2. 본인 신용정보 열람, 정정청구 및 삭제 요구 등 39
3.2.3.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 42
3.2.4.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45
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47
4.1.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47
4.1.1.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47
5.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51
5.1. 보건·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51
5.1.1.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51

1.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1.1. 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1.1.1. 개인정보 수집, 사용 시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정보주체 동의 획득, 피해구제조치 및 파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 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하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2호).

누구든지 속이는 행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를 받거나 스스로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1. 위반 사실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위 1.의 위반행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 3.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4항제12호의2).

1.1.2. 이용자의 동의 획득

개인정보 수집·제공, 접근권한 등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다음의 기준을 감안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획득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호).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함)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호의2).

제3자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시에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음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처리위탁·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제5항).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 초과금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의 제공 및 국외 이전 시 제3자 제공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동의 거부로 인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을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을 위한 별도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호).

1.1.3. 피해구제조치, 파기 등 의무

정보통신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와 피해구제 조치의무 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함)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함)이 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본문).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4항 전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7호·제18호).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법 및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이라 함)으로 72시간 이내에 위의 1.~5.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본문).

▪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엔 그 조치를 하거나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

▪ 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유출등의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구체적인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점과 그 경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과 유출등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 등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인정보 파기의무 및 파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단서·제3항).

▪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항).

▪ 개인정보의 파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2항).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전용 소자장비 이용,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는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등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완전 파기가 어려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비밀유지 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제5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1.2. 개인정보 보호하기

1.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 철회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라 함)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동의 철회 시 조치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1.2.2.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절차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6제1항 본문).

-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제1항 단서).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

>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요구 시 조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 및 삭제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19호).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알리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1호).

※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본문).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2호).

▸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리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10호).

1.2.3.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는 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정보의 삭제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5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6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전단).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권리침해를 받은 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 후단).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4항 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및 제44조의2제5항).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자는 소제기를 위해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 “분쟁조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 기구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조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업무를 수행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제44조의18).

※“이용자 정보”란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 주소,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 ※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는 우편, 팩스, 방문, 구술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http://remedy.kocs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의 처리

▪ 분쟁조정부는 위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2항).

▹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1.2.4.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정보 침해를 받았을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본문).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단서).

▪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4항).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위의 손해배상청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본문).

▹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

손해배상의 보장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1항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제1항).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함)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3항).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공공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 갖춘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 위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2.1.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의무

2.1.1.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시 지켜야할 원칙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 등에 있어 동의획득, 기록·보존, 누설금지 및 파기 등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무

▪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 최소한의 수집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대표적으로 통신기지국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해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22.6.) 29면 참조].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6호).

기망(欺罔)을 통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기망을 통한 수집 금지

▪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란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친구찾기, 물류, 경호, 관광안내, 차량관제 등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 사업자가 해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2. 6.) 31면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호).

위치정보수집 장치를 부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告知)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이 됩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렌터카 사장이 자신의 자동차(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경우, 이는 곧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사례(15-0816, 2016. 1.14. 국토교통부) 참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은 동의 및 이용약관 범위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용·제공의 제한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함)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

▹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 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사물위치정보사업자”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본문).

▪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호).

2.1.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획득 의무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용약관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5호).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 시에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획득 의무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②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의 통보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이용약관 명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5호).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다음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

-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획득 의무

▪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1조 및 제25조제1항).

>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제1항).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그 밖에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법정대리인은 위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한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0호).

2.1.3. 기록·보존, 누설금지, 파기의무 등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기록 및 보존 의무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위반시 제재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호의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치정보 누설·공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누설 등의 금지

▪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인위치정보는 휴업·폐업 시 파기해야 합니다.

파기 의무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기록·보존해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8호의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승인을 받아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과 동시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휴업승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함)
-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폐업승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함)
- 사물위치정보사업자의 폐업신고: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함)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로 한정함)를 파기해야하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와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사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사업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로 한정함)를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2.2. 위치정보 보호하기

2.2.1.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절차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위 동의 철회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대부분의 경우 친권자인 부모입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의 유언에 따른 지정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8호의3).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중지 요구 절차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일시중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위 일시중지요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일시적인 이용중지요구를 거절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5호).

자신의 개인위치정보 열람·고지(告知) 및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 절차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위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가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8세 이하의 아동등인 경우 보호의무자)의 열람·고지 및 정정요구를 거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9호).

2.2.2. 개인위치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위치정보 침해를 받았을 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개인위치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분쟁 발생 시 재정(裁定)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재정의 신청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 등”이라 함)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www.kmcc.go.kr)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분쟁조정의 신청

▪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무단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지 않아 위치정보가 누설·변조·훼손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자가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가 유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무단 수집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 피해를 준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피해를 준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대해 동의 철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 정정 요구를 거절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준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 후견인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2.3.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2.3.1.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전단).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

▪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격자´라 함)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하 ´실종아동 등´이라 함)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한 다음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9
-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단).

-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43조제2항제11호).

▪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배우자 또는 목격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도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개인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1항).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①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호·제6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

▪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요청을 할 때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각각의 측위(測位) 방식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에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2호).

경보발송을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보발송 요청 절차

▪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 경보를 발송할 시간·간격 및 횟수

▸ 그 밖에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장치

▸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의무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경보발송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경보발송을 거부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해야 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3. 금융·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3.1. 신용정보회사 등이 지켜야할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3.1.1.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의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시 최소한,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 이하 같음),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수집·처리의 원칙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정보로 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 위 1.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 이를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

수집·처리의 제한

▪ 신용정보회사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및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4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 위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3.1.2.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획득 의무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

7. 위 1.~6.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획득 의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이야기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6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후단).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1항).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위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제10호).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기타 신분증명서에 따라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제10호).

동의 획득 의무가 없는 경우

▪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

▪ 신용정보회사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함)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6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0항).

-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해야 함)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①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②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함)
-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양 목적 간의 관련성,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않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회사 등이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정보이용목적이 기재된 의뢰서 및 이용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제10호).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획득 의무

- 신용정보회사등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의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시 동의와 같이 해당 개인에게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 제15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29조)

  -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미리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6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3.1.3. 파기, 누설금지, 고지 및 통지의무 등

신용정보회사 등은 폐업시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폐업 시 파기 의무

- 신용정보회사 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외함)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의 보유정보를 처분, 삭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

  - 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 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보관된 파일 등

  ※ “신용정보회사 등”이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보유정보를 처분,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4호).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업무목적 외 누설금지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함)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함)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위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는 그 개인비밀이 업무 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 - 신용정보회사 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안됩니다.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위의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금융거래정보 누설 등의 원칙적 금지

▪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함)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를 고지(告知)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함)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한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다음의 신용정보와 일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제1호의4)
  -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 및 제1호의6)
-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 시 본인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 √ 위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상거래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일정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7호).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을 때 통지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누설 통지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함)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3호).

3.2. 신용정보 보호하기

3.2.1.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

개인신용정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함)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을 제공받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단서).

연락중지 청구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무실·점포 등을 방문하여 연락중지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고지 의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말로 동의 철회권 및 연락중지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전단).

▪ 말로 고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추가 고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후단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4항).

▪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8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가 쉽게 동의 철회 또는 연락중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5항).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의 후속조치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항).

3.2.2. 본인 신용정보 열람, 정정청구 및 삭제 요구 등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 신용정보주체(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말함)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본인임을 확인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 그 밖의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경우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신용정보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 신용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함)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함)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일 것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 정정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등은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제2항).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 신용정보회사 등은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의 삭제 또는 정정한 사실 및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린 사실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본문).

▪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다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단서).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함)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2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 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처리결과 통지의무를 위반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위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감독원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 신용정보회사 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8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9호).

본인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 및 활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1항).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및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로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3제1항).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의2제2항).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위 경우에 해당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관리해야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 제33조의3제3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3제2항·제3항).

√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는 방법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위 경우에 해당되고 금융거래 등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1호).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

무료 열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4개월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함)에 대하여 다음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무료 열람권을 침해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2호).

3.2.3.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요청

본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사항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제6항).

-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조회 방법

▪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 √ 신용정보집중기관
  - √ 개인신용평가회사
  -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 개인신용조회회사
  -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 은행,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등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 공제조합, 국채등록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

▹ 신용정보회사 등으로서 위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위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 신용정보회사 등은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조회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본문).

▹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 성과관리

√ 위탁업무의 수행

√ 업무의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단서).

위반 시 제재조치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제11호).

본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 요청

▪ 신용정보회사 등은 위의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위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신용정보회사 등의 조치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위반 시 제재조치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제11호).

본인 신용조회사실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 및 활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2제1항).

▪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통지 방법

▪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와 비슷한

방법 및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3항).

▪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 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제4항).

위반 시 제재조치

▪ 이를 위반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0호).

3.2.4.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구제방법

개인신용정보 침해를 받았을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 개인신용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분쟁 발생 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신용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함)와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본문).

▹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단서).

▪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5항).

▪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

법정손해배상 청구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함)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제1항 후단).

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4.1. 교육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4.1.1.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학생정보 제공 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 학교의 장은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획득 의무를 가지며, 보호자는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획득 의무

▪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이하 같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3항).

▪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 "학교생활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건강검사기록"이란 학교의 장이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건강검사실시결과자료로서, 여기에는 인적사항,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학교보건법」 제7조의3).

▹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학교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은 위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해당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2항).

▪ 위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료를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3항).

▸ 이를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보호자는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열람권

▪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3항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란 1만여개의 초·중·고·특수학교, 178개 지역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처리하며, 국민편의증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정부24),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종합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화 개요 참조).

※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

·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정보 등 학생정보와 학교교육일정 및 연·월간 학사일정 등 학교정보를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합니다.

· 학부모서비스 이용절차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해당 시도교육청 선택 → 학부모서비스 신청 → 해당학교의 학부모서비스 승인(학부모는 1회 승인으로 수시열람 가능) → 자녀정보조회]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각 시도교육청 참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정보 및 학교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열람 신청 및 열람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nei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의 승인

▪ 학교의 장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전산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려는 경우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한 후 해당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해야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 인증서(「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
-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함)

▪ 이때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합니다(「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졸업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퇴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학생정보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적 적용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제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 등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 ※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5.1. 보건·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5.1.1. 보건·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의무 및 구제방법

유전정보는 보호를 받으며, 그 처리가 제한됩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 금지, 유전정보 제공·이용 등이 제한됩니다.

유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

※ "유전정보"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4호).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전정보에 따른 차별금지

▪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하여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4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유전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유전정보 등의 제공 시 개인정보 익명화

▪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등을 다른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해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38조제2항).

▪ 인체유래물 등을 익명화하지 않고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4호).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인체유래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해야 합니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이를 위반하여 인체유래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때 익명화하지 않고 채취·생성·보존·연구 또는 제공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상물을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하였을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유래물은행의 지정·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유전정보 이용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0조제1항, 제54조제1항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

▹ 배아생성의료기관

▹ 배아연구기관

▹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기관

▹ 인체유래물은행

▹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려는 자가 속한 기관

▹ 유전자치료기관

▹ 유전자검사기관

※ 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제6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유전정보 제공의 제한

▪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같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4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유전정보 등은 익명화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유전정보 등의 익명화

▪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익명화해야 해야 하며,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4항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인체유래물 등과 동의서의 관리에 필요한 익명화 방법
- 물리적·행정적 개인정보 보호 방법
-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 제공 방법
- 인체유래물은행의 휴업·폐업 시 보관 중인 인체유래물등의 이관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안
- 인체유래물등 폐기 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안
- 인체유래물은행의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이를 위반하여 인체유래물 등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7호).

보안담당책임자의 지정

▪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인체유래물 기증자 개인식별정보와 인체유래물 등의 분리 보관
- 인체유래물 등에 대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익명화
- 인체유래물 기증자와 인체유래물 등의 기록·정보에 대한 보안조치
- 익명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담당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7호).

본인 보건의료 관련 기록 및 장기(臟器) 또는 인체조직 관련 기록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요청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질병 그 밖에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1항 전단).

▪ 원칙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의료법」 제21조제2항).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제3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을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며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공

▪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장기 등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사람 본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조).

-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 또는 그 가족·유족이 해당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해당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장기 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골수·안구,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췌도(膵島), 소장, 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 및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이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제2호).

> ※ 장기 등 기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장기기증·이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조직채취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제공

▪ 인체조직은행의 장은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나 그 유족이 해당 조직의 채취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조직기증 제반에 관한 기록 또는 이식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그 기록의 내용을 조직을 기증하거나 이식받은 자가 알게 되는 경우 그의 치료 또는 회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인체조직"이란 위의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 심장판막·혈관, 신경(神經) 및 심장막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이를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5호).

> ※ 인체조직기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장기기증·이식』의 <장기 외 기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보건·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9조).

> ※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 ※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제기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 등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 ※ 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 ※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의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